신규주민등록증 안내문 반송자 공고

공고 제 2021-38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대상자 중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연번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발 급 기 간	공고일자	사 유
1	박*주	04.10.13.	2021.11.01.-2022.10.31.	2021.11.25.	폐문부재
2	이*민	04.10.01.	2021.11.01.-2022.10.31.	2021.11.25.	폐문부재
3	김*나	04.10.09.	2021.11.01.-2022.10.31.	2021.11.25.	폐문부재
4	박*연	04.10.25.	2021.11.01.-2022.10.31.	2021.11.25.	폐문부재
5	김*현	04.10.22.	2021.11.01.-2022.10.31.	2021.11.25.	폐문부재
6	송*아	04.10.27.	2021.11.01.-2022.10.31.	2021.11.25.	폐문부재
7	유*현	04.10.07.	2021.11.01.-2022.10.31.	2021.11.25.	폐문부재
8	권*지	04.10.31.	2021.11.01.-2022.10.31.	2021.11.25.	폐문부재
9	김*연	04.10.20.	2021.11.01.-2022.10.31.	2021.11.25.	폐문부재
10	김*성	04.10.23.	2021.11.01.-2022.10.31.	2021.11.25.	폐문부재
11	윤*진	04.10.16.	2021.11.01.-2022.10.31.	2021.11.25.	폐문부재
12	전*민	04.10.11.	2021.11.01.-2022.10.31.	2021.11.25.	폐문부재

1. 발급순서
   1)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귀와 눈썹이 나와야 함)와 본인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라야 함) 지참
   학생증이나 신분증명서가 없을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
   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기재하여 신청인이 직접 제출

2. 위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장